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등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일치화를 위해 정비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. (안 제36조 제1항 제1호)
- 나.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추가함. (안 제55조)
- 다.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. (안 제57조 제1호)
- 라. 조사의 보류에 법원을 추가함. (안 제62조 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2. ~ 6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령 제 호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 제1항 제1호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군사법원 또는 법원”으로 하고, 제55조 제목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문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)”으로 하고, 제57조 제1호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군사법원 또는 법원”으로 하며, 제62조 제2호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군사법원 또는 법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. 1. <u>군사법원</u>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(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) 2.~3. (생략)	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. 1. <u>군사법원 또는 법원</u>----- ----- ----- 2.~3. (현행과 같음)
제55조(<u>군사법원</u> 또는 징계위원회와의 관계) <u>군사법원</u>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.	제55조(<u>법원</u> 또는 징계위원회와의 관계) <u>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)</u> 또는 - ----- ----- ----- -----
제57조(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)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(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	제57조(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) 참모총장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1. <u>군사법원</u>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(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.~7. (생략) 제62조 (조사의 보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. 1.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. <u>군사법원</u>에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3.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	1. <u>군사법원 또는 법원</u>에서 유죄판결 ----- ----- ----- 2.~7. (현행과 같음) 제62조 (조사의 보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군사법원 또는 법원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47